

신 주 발 행 공 고

**미래산업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6년 05월 30일 개최한
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**

- 다 음 -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98,000,000 주 (이하 "본 주식"이라 한다.)
2. 1 주당 액면가액 : 100 원
3.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
4. 1 주당 발행가액 : 舊 「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 57 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한다. 단,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 5-15 조의 2 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 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.
5. 신주배정기준일 : 2016 년 06 월 22 일
6. 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6 년 06 월 23 일 ~ 2016 년 06 월 27 일
(명의개서대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7. 청약기간
 - (1) 우리사주조합원 : 2016 년 06 월 23 일 (1 일간)
 - (2) 구주주 : 2016 년 07 월 26 일 ~ 2016 년 07 월 27 일 (2 일간)
 - (3) 일반공모청약자 : 2016 년 08 월 02 일 ~ 2016 년 08 월 03 일 (2 일간)

8. 청약처

- (1) 우리사주조합원 :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의 본•지점
- (2) 구주주
 - 실질주주 : 주권을 위탁한 증권회사 또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의 본•지점
 - 명부주주 :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 본•지점
- (3) 일반공모청약자 :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 본•지점, 한양증권(주)의 본•지점, 유진투자증권(주)의 본•지점

9.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

- (1)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단위는 1 주로 하며,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.
- (2)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 주로 하며,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 1 주당 0.15248382 주로 한다(1 주 미만은 절사함). 또한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청약한도의 20%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,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,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,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.
- (3) 일반공모청약자는 최소 청약단위를 100 주로 하여 아래에 구분된 범위로 청약하되, 일반 공모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및 단수주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%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
구분		청약단위
100 주 초과	1,000 주 이하	100 주
1,000 주 초과	5,000 주 이하	500 주
5,000 주 초과	10,000 주 이하	1,000 주
10,000 주 초과	50,000 주 이하	5,000 주
50,000 주 초과	100,000 주 이하	10,000 주
100,000 주 초과	500,000 주 이하	50,000 주
500,000 주 초과		100,000 주

10. 청약증거금 : 청약금액의 100%

11. 청약방법

- (1)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의 본•지점에서 일괄 청약한다.

- (2)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위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케이티비투자증권(株)의 본·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. 다만,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자기명의로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케이티비투자증권(株)의 본·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.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 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%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. 이때,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%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.
- (4) 일반공모청약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, 청약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및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. 일반공모청약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1 개의 청약처에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며,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1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.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시, 청약처에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, 동규정 제 9 조 제 4 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(5)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, 1 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, 이때 받는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2. 배정방법

- (1) 우리사주조합청약 : "본 주식"의 20%인 19,600,000 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.
- (2) 구주주청약 : "본 주식"의 80%인 78,400,000 주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 1 주당 0.15248382 주로 배정하며,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,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,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,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.
- (3) 초과청약 :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배정주식 1 주당 0.2 주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한다. 단,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식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100% 배정한다.

청약한도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한도주식수 + 초과청약한도주식수

(*) 신주인수권증서청약한도주식수 =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

초과청약한도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한도주식수의 20%

- (4)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: 상기 우리사주조합청약,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「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주식의 10%를 배정한다.
- (5) 일반공모청약 : 상기 우리사주조합청약, 구주주청약,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, 한양증권(주), 유진투자증권(주)이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,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.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한 총청약주식수를 일반공모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.
- 1) **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**,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가 최소화되도록 한다. 이후 최종 잔여주는 최고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, 동순위 최고 청약자가 최종 잔여주보다 많은 경우에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다.
 - 2) **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**, 청약주식수 대로 배정하고,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, 한양증권(주), 유진투자증권(주)이 아래 표의 각 인수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.

[인수비율]

구분		인수비율
대표주관회사	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	45.0%
인수회사	한양증권 주식회사	40.0%
	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	15.0%
합계		100.0%

- 3)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, 한양증권(주), 유진투자증권(주)은 「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9 조 제 2 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 250,000 주(액면가액 100 원 기준)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 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잔여주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.

13. 환불일 : 2016 년 08 월 05 일

14. 청약증거금의 대체 :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,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.

15. 납입기일 : 2016 년 08 월 05 일

16. 납입처 : KEB 하나은행 천안공단지점

17. 주권교부예정일 : 2016 년 08 월 17 일

18. 주권교부처 :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

19. 주권상장예정일 : 2016 년 08 월 18 일

20. 배당기산일 : 2016 년 01 월 01 일

21. 자금조달의 목적 : 차입금상환 및 운영자금 등

22. 증권회사의 인수주선방법 : 잔액인수

- 대표주관회사 :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(인수한도 의무주식수 비율 : 45/100)
- 인수회사 : 한양증권(주)(인수한도 의무주식수 비율 : 40/100),
유진투자증권(주)(인수한도 의무주식수 비율 : 15/100)

23. 명의개서대리인 :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

- (1)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,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에
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.
- (2)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한 명부주주에 대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신주인수
권증서 실물을 교부하는 방식 또는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
행하고 이를 주주별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- (3)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
하고, 최소한 5 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한다.

24. 기타 사항

- (1)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
- (2) 기타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주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 : 2016 년 06 월 22 일
2. 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6 년 06 월 23 일 ~ 2016 년 06 월 27 일

2016 년 05 월 30 일

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7 로 65

미래산업주식회사

대표이사 이 권 휴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